

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의안번호 제2584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. 3. 3. 최두임 의원 등 6인
나. 회 부 일 자: 2023. 3. 14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3. 3. 21.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- 현행 규칙 제2조에 따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4호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03조 제1항에 규정한 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반영하여 그 범위를 상세화하고,
- 국민권익위원회 『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(2022. 12. 20.)』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수정(안 제2조제4호)
 -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규정한 지역협의체의 요청을 받는 경우를 규정
-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에 대한 제한 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(안 제8조제1항제4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4호,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03조제1항,
행정안전부 「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 표준안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5호

- 입법예고 기간: 2023. 3. 3.(금) ~ 2023. 3. 10. [7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5. 본 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를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반영하여 그 범위를 상세화하고,
- 국민권익위원회 『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(2022. 12. 20.)』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.

8. 토 론: 없음.

9. 심사결과: 2023. 3. 21. 원안가결